

2007. 7. 18(금) 10:00

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(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안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(전문위원 강국희)

<의안번호 제2007 - 26호>

[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안]
검 토 보 고 서

I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6. 30.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회부일자 : 2007. 7. 4.

II.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

1)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회 추경 예산액		기정 예산액		증(△)감	
	예산안	구성비	예산액	구성비	증감액	증감률
합 계	349,796,043	100	302,032,596	100	47,763,447	15.8
일반회계	292,355,838	83.6	247,146,009	81.8	45,209,829	18.3
특별회계	57,440,205	16.4	54,886,587	18.2	2,553,618	4.7

- 금번 추경은,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·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내용의 증감 및 변경, 취소 등 변동요인이 발생된 기정예산의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
-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7억 6,344만 7천원 (15.8%)이 증액된 3,497억 9,60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 그중, 일반회계는 2,923억 5,58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52억 982만

9천원이(18.3%)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는 574억 4,02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5,361만8천원이(4.7%) 증액되었음.

2) 세입예산(일반회계+기타특별회계)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회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	증감율
계	321,470,991	275,786,706	45,684,285	16.6%
지방세수입	15,091,441	13,886,399	1,205,042	8.7
경상적세외수입	6,417,746	6,381,746	36,000	0.7
임시적세외수입	24,015,274	24,281,482	△266,208	△1.1
지방교부세	157,525,046	124,345,526	33,179,520	26.7
재정보전금 (조정교부금)	3,910,000	3,910,000	-	0.0
국고보조금	78,320,654	73,449,220	4,871,434	8.0
도비보조금	34,090,830	27,432,333	6,658,497	24.3
지방채 (국내차입금)	2,100,000	2,100,000	0	0.0

○ 제1회 추경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6.6%가 증액된 3,214억 7,099만 1천원으로 편성됨.

3) 세출예산(일반회계+특별회계+공기업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회 추경 예산액		기정 예산액		증 (△) 감	
	예산액	구성비	예산액	구성비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349,796,043	100	302,032,596	100	47,763,447	15.8
의회운영위원회	1,075,154	0.3	1,110,383	0.4	△35,229	△3.2
총무위원회	144,723,376	41.4	130,907,981	43.3	13,815,395	10.5
산업건설위원회	175,672,461	50.2	143,768,342	47.6	31,904,119	22.2
공기업특별회계	28,325,052	8.1	26,245,890	8.7	2,079,162	7.9

○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3,497억 9,604만 3천원으로서
기정예산액 대비 477억 6,344만 7천원이(15.8%) 증액 되었음.

- 소관 위원회별로 살펴보면,

-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3,522만 9천원이 예산 10% 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편성 하였으며,
-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 1,539만 5천원이 (10.5%) 증액 되었으며,
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9억 411만 9천원이 (22.2%) 증액 되었으며,
-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,916만 2천원이 (7.9%) 증액 되었음.

Ⅲ.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

《총무위원회》

□ 심사결과

○ 일반회계

- 세 입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세 출 : 7건에 612,65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하고,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.

○ 특별회계

- 세 입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세 출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○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: 해당사항 없음.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 조서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		통계목 (부기명)	요구액	증감액	조정액	사 유	페이지
	정책	단위	세부						
계				7건	1,112,650	△612,650	500,000		
기획 감사실	군정 기획 조정	군정 홍보	군정 홍보 및 광고	201-01(일반운영비) 주간지 광고료	8,800	△8,800	0	예산과다 편성	P71
				201-01(일반운영비)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료	2,750	△2,750	0	예산과다 편성	P71
기획 감사실	군정 기획 조정	재정 운영	효율적 재정 운영	207-01(연구개발비) 당면현안사업 관련 용역비	600,000	△100,000	500,000	예산과다 편성	P71
행정과	행정의 효율성 강화	지역혁 신 지원	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	201-01(일반운영비) 지역신문 광고	1,100	△1,100	0	예산과다 편성	P92
문화 관광과	관광 진흥	관광 활성화	관광지 관리	401-02(시설설계비) 관광펜션단지조성 실시 설계비	28,000	△28,000	0	적법절차 미이행 및 사업타당성 재검토	p142
“	“	“	“	401-04(실시비) 관광펜션단지조성	468,400	△468,400	0	적법절차 미이행 및 사업타당성 재검토	p142
“	“	“	“	401-06(시설부대비) 관광펜션단지조성 시설부대비	3,600	△3,600	0	적법절차 미이행 및 사업타당성 재검토	p142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건부 승인 조서

(단위 : 천원)

회계 별	과 목		사 업 명	요구액	승인액	조건부 승인내역	비고
	관	항					
			해당없음				

《산업건설위원회》

□ 심사결과

○ 일반회계

- 세 입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세 출 : 5건에 4,500,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하고,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.

○ 특별회계

- 세 입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세 출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○ 세입예산안 변동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변동조서

(단위 : 천원)

부서 명	과 목			통계목(부기명)	요구액	증감액	조정액	사 유	비고
	정책	단위	세부						
계				5건	4,500,000	△4,500,000	0		
산림 환경 과	산림자 원조성	푸른거 창조성	시설및 부대비	401-01 (기본조사설계비) 아림숲 조성	28,770	△28,770	0	적법절차 미이행	
“	“	“	실시 설계비	401-02 (실시설계비) 아림숲 조성	57,750	△57,750	0	“	
“	“	“	토지 매입비	401-03 (토지매입비) 아림숲 조성	2,400,000	△2,400,000	0	“	
“	“	“	시설비	401-04 (시설비) 아림숲 조성	2,005,920	△2,005,920	0	“	
“	“	“	시설 부대비	401-06 (시설부대비) 아림숲 조성	7,560	△7,560	0	“	

○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변동조서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과 목		사 업 명	요구액	증감액	사 유	비 고
	관	항					
			해당없음				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건부 승인 조서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과 목		사 업 명	요구액	승인액	조건부 승인내역	비 고
	관	항					
			해당없음				

9. 주문사항

《총무위원회》

- 해당없음

《산업건설위원회》

-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실시설계비, 시설부대비 등의 요율 적용에 있어 대부분의 실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보다 높게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바,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에 맞게 하시기 바람.(전실과)
- 민간 자본보조시 법인이나. 개인의 사기업에 대하여 지원시 지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때 지원하기 바라며, 특히 악취가 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주민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하시기 바람.(농업기술센터)